

KERI Brief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glcho@keri.org)

다 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으면 자본유출이 늘어나고 고용과 성장이 둔화되어 세입기반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사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경제민주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실효세율이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기존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의 회계장부를 이용할 경우 기업마다 회계기준이 다르거나 저세를 국가로의 소득이전효과를 분리할 수 없어 각 국가의 실질부담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효세율보다는 한 단위 투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한계실효세율이 국제 비교의 지표로 보다 적합하다. 한계실효세율은 법정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기타 자본관련 세율, 감가상각률, 인플레이션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

하여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hen and Mintx (2015)가 추정한 한계실효세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에 30.1%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투자하기에 적합한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밖에도 국제비교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GDP 대비 법인세 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고,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높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의 Tax Foundation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법인세율의 'ITC(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위, World Bank가 발표하는 'Paying Tax' 지표에서는 15위를 기록하여 법인세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사회·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추정한 '정상수준' 지표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제비교지표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비효율적이고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상할게 아니라 법인세를 인하하여 자본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1. 논의 배경

□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최근 야당은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가 2009년도에 법인세를 인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정상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내용은 과세표준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009년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7%에서 1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정책실패로 기록될 거라는 반대 논리도 거세게 대두되고 있음

- 디지털·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국가 간 세부담 격차가 자본의 국간 간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¹⁾

- 또한 기업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이 낮고 투자수익률(rate of return of capital) 높은 나라를 찾아 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법인세를 인하하여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투자는 임금을 상승시키고 고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의 근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으면 자본유출이 늘어나고 고용과 성장이 둔화되어 세입기반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사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있음

□ 법인세 인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바른 비교지표를 이용한 국제간 비교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한 국가의 법인세 부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비교 지표로는 법정세율(STR: Statutory Tax Rate), 실효세율(ETF: Effective Tax Rate), 한계실효세율(METR: Marginal Effective Tax Rate),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총 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입 비중, 국제간 비교를 통한 정상세율(ITC: International Tax Comparison) 등을 꼽을 수 있음

- 지표마다 특성이 다르고 비교 목적에 적합한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할 때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각 지표의 개념, 추정방법, 장단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을 가늠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이전가격 거래 확대, 무형자산에 대한 법적소유권과 실질 소유권 분리, 고정사업장 없는 인터넷 거래 확대, 혼성불일치 상품 거래 확대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다국적 기업의 국제간 소득이전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음. 참조 조경엽(2016).

2. 국제비교 지표

가. 법정세율(STR)

▣ 법정세율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써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의 원인과 규모 및 민감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됨

- 법정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조세혜택이 많을 경우 기업의 세부담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세율 자체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부적합
- 그러나 법정세율은 실질적인 세부담, 자본의 사용 자비용, 자본의 수익률 등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정세율을 통한 국제비교

는 의미를 가지게 됨

- 대부분의 나라가 법정 최고세율을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에 비해 3.3% 인하하여 최고세율이 2014년 현재 24.2%를 기록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터키가 10%p 인하하여 가장 큰 인하폭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은 영국이 9%p, 독일이 8.7%p, 슬로베니아 8%p, 케나다 7.9%p 인하하는 등 22개국 이 인하하였음
 -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포르투갈, 프랑스, 슬로바키아, 아이스랜드, 칠레, 헝가리 등 6개국에 달함
 -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3.3%p를 인하하여 현재 24.2%로 OECD 국가 중 20번째로 낮고, 미국의 법인세율이 39.1%로 가장 높고, 아일랜드가 12.5%로 가장 낮음

〈표 1〉 법정 최고세율의 국제비교 (%)

	법정 최고세율		순위		변화(%p)
	2005	2014	2005	2014	
U.S.	39.3	39.1	2	1	-0.2
France	35.0	38.0	4	2	3.0
Japan	39.5	37.0	1	3	-2.5
Belgium	34.0	34.0	7	4	0.0
Portugal	27.5	31.5	21	5	4.0
Germany	38.9	30.2	3	6	-8.7
Spain	35.0	30.0	4	7	-5.0
Australia	30.0	30.0	14	7	0.0
Mexico	30.0	30.0	14	7	0.0
Luxembourg	30.4	29.2	13	10	-1.2
New Zealand	33.0	28.0	9	11	-5.0
Italy	33.0	27.5	9	12	-5.5
Norway	28.0	27.0	18	13	-1.0
Israel	34.0	26.5	7	14	-7.5
Canada	34.2	26.3	6	15	-7.9
Greece	32.0	26.0	11	16	-6.0

Austria	25.0	25.0	25	17	0.0
Netherlands	31.5	25.0	12	17	-6.5
Denmark	28.0	24.5	18	19	-3.5
Korea	27.5	24.2	21	20	-3.3
Sweden	28.0	22.0	18	21	-6.0
Slovak	19.0	22.0	29	21	3.0
Switzerland	21.3	21.1	28	23	-0.2
U.K.	30.0	21.0	14	24	-9.0
Estonia	24.0	21.0	27	24	-3.0
Finland	26.0	20.0	23	26	-6.0
Iceland	18.0	20.0	31	26	2.0
Chile	17.0	20.0	32	26	3.0
Turkey	30.0	20.0	14	26	-10.0
Hungary	16.0	19.0	33	30	3.0
Poland	19.0	19.0	29	30	0.0
Czech	26.0	19.0	23	30	-7.0
Slovenia	25.0	17.0	25	33	-8.0
Ireland	12.5	12.5	34	34	0.0
단순평균	28.2	25.4	-	-	-2.8

주: 지방세 포함
 자료: OECD Stats.

나. 실효세율(ETR)

□ 실효세율은 조세혜택을 감안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과세당국의 자료 이용하거나 기업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실효세율은 납부세액을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나누어 추정되기 때문에 법정세율에 반영되지 않는 조세지출 항목을 반영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r^e = \frac{\text{total tax}}{\text{taxable income}}$$

- 과세당국의 소득신고 자료를 이용할 경우 국가마다 과세체계와 조세지출항목이 달라 일관성 있는 비교 지표를 구축하기 힘들
- 기업 회계자료를 이용할 경우 기업마다 회계 작성방법이 다르고, 국내소득과 해외이전 소득을

분리할 수 없어 해당 국가의 세부담 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지님

(1) 과세당국의 소득신고를 이용한 실효세율 추정

- 과세체계는 글로벌 과세체계(worldwide tax system)와 영토주의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으로 구분되는데,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 소득과 세부담에 포함되는 내용이 달라짐
- 글로벌 과세체계 하에서는 국내소득이든 해외소득이든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영토주의 과세체계 하에서는 국내 소득만 신고하고 있음²⁾

2) 영토별 과세체계 하에서는 과세당국은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해당 국가에 있기 때문에 해외 소득과 해외 납부세액을 국내에 신고할 필요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국가 중 28개 국가가 영토주의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가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음³⁾ ○ 글로벌 과세체계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납부세액을 공제하거나 소득을 공제하고 있음 ○ 한국과 미국과 같이 해외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경우 다른 여건이 같다면 실효세율이 높게 추정되는 경향을 보임⁴⁾ <p>□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의 정의, 운영방식, 포함 항목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소득(분모)과 세부담(분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국제비교를 위한 일관성 있는 지표 수립이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가 1995년에 최초로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조세체계의 일반표준(norm)”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조세체계에 벗어나는 항목을 조세지출로 정의하고 있음 ○ 기준조세체계는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함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을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 특례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음 ○ 직접세의 경우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는 면제 및 저율과세’ 등을 포함하고 있음 <p>- 국가마다 포괄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항목을 각 국가의 조세지출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음</p> <p>□ 과세체계와 조세지출보고서를 정확히 적용할 경우, 기존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추정에 따르면 실효세율은 14.2%에 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조세체계의 차이, 운영방식, 추정기법의 차이로 조세지출 항목이 국가마다 달라 기준조세체계 항목도 자연히 국가마다 달라짐 ○ 국가마다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별 실효세율을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우리나라도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을 법조항에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다소 불분명한 형태로 『국가재정법』 27조와 시행령의 부칙에 조세지출을 규정하고 있음⁶⁾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글로벌 과세체계는 한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등이 채택하고 있음. 영토별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영국, 뉴질랜드가 2009년에 전환하였으며, 2000년 이후 10개국이 영토별 과세체계로 전환하면서 208개국이 영토별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4) 고세율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전부 공제할 경우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제한도를 해외소득에 국내세율을 곱하여 추정된 납부세액으로 정하고 있음 5) 김종면,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참조. 6) 국가재정법 27조 1항,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는 과세소득에는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세부담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한 국내납부세액만을 포함하여 실효세율을 과소추정하고 있음 ○ NABO는 이월결손금 및 기타 소득공제 항목을 조세지출 항목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음 <p>-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실효세율은 17.2%에 달해 NABO에서 추정한 실효세율보다 3%p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는 과세소득에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납부세액에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 ○ 기재부는 이월결손금 및 기타 소득공제 항목을 기준조세체계항목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다년간의 평균소득에 과세한다는 의미로써 기업의 진짜 이윤과 손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소득개념이라 할 수 있음⁷⁾ ○ 또한 이월결손금은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조세체계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의 특성과 조세지출항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지방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을 과소 추정하고 있음 <p>-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의 특성과 조세지출항목을 정확히 반영하고 지방납부세액을 포함할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2014년 실효세율은 18.8%에 달함</p>
	7) Pomerleau and Cole(2016) 참조.

〈표 2〉 계산방법에 따른 실효세율 차이

	금액 (백만 원)	비고
소득금액 (1)	249,470.0	· 글로벌 과세체계: 국내소득 + 해외소득
이월결손 및 기타 소득공제 (2)	27,644.7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선박표준이익 등은 조세지출항목이 아닌 기준조세체계 항목으로 분류
과세표준 (3) = (1)-(2)	221,825.4	· 기준조세체계인 이월결손금 제외한 과세소득
국세 + 외국 납부세액 (4)	38,229.7	
외국납부세액 (5)	2,785.6	
국세납부세액 (6) = (4)-(5)	35,444.0	
지방세 납부세액 (7) = (6)*0.1	3,544.4	
총부담세액 (8) = (5) + (6) + (7)	41,774.0	· 기업의 실질부담액
국회예산정책처 (9) = (6)/(1)	14.2	$\frac{\text{국내납부세액}}{(\text{국내소득} + \text{해외소득})}$
기획재정부 (10) = (4)/(3)	17.2	$\frac{\text{국내납부세액} + \text{해외납부세액}}{(\text{국내소득} + \text{해외소득})} - \text{이월결손금}$
한경연 (11) = (8)/(3)	18.8	$\frac{\text{국내납부세액} + \text{해외납부세액} + \text{지방납부세액}}{(\text{국내소득} + \text{해외소득})} - \text{이월결손금}$

자료: 2015 국세통계연보, 법인세 신고 현황.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 국세의 10%로 연계하여 과세되던 지방법인소득세가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의 조세지출항목이 전부 폐지되기 때문에 향후 지방세 납부세액 증가로 인한 실효세율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⁸⁾

□ <표 3>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법인 규모별·연도별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4년 법인세수의 82.1%를 상위 1%가 부담하고 91.4%를 상위 10%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 소득신고 기준으로 지방세수를 제외한 2014년 법인세수는 35조 4,440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91.4%인 32조 3802억 원을 상위 10%가 부담하고, 82.1%인 26조 5,737억 원을 상위 1%가 부담하고 있음⁹⁾

- 일반기업의 2014년도 실효세율은 20.6%로 추정되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3.9%보다 6.7%p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실효세율이 2010년에 하락하여 19% 내외 수준으로 보이고 있지만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최근 실효세율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¹⁰⁾

- 8)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법인세의 2014년도 조세지출액은 7조 902억 원에 달하고 있음. 독립세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지방세 조세지출액은 이중 10%인 7천 9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독립세로 전환되면 지방법인세의 조세지출 항목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지방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 9)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부과된 세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 징수액과 차이가 있음
- 10)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최저한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축소, R&D 비용 세액공제를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세수증가분은 7.2조 원에 달함.

<표 3> 규모별·연도별 실효세율: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

	전체			일반기업			중소기업		
	NABO	기재부	한경연	NABO	기재부	한경연	NABO	기재부	한경연
2007	17.3	20.7	22.7	18.0	22.1	24.3	15.2	16.8	18.5
2008	18.3	21.1	23.1	19.1	22.2	24.4	15.5	17.3	19.0
2009	17.4	20.2	22.2	18.5	21.8	23.9	13.9	15.4	17.0
2010	14.5	17.4	19.0	15.5	18.8	20.6	11.7	13.3	14.6
2011	14.7	17.3	19.0	15.5	18.5	20.3	11.9	13.4	14.7
2012	15.4	17.9	19.5	16.4	19.1	20.9	12.1	13.5	14.8
2013	14.7	17.1	18.7	15.8	18.5	20.3	11.1	12.5	13.7
2014	14.2	17.2	18.8	15.2	18.9	20.6	11.4	12.6	13.9
연평균	15.8	18.6	20.4	16.7	20.0	21.9	12.8	14.3	15.8

주: NABO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한 실효세율 추정

□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할 경우, 기업별 실효세율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과 법인세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내역이 기업마다 상이하여 국제비교로 부적합함

- 기업에 따라 미국기준(US Accounting Standard) 또는 국제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을 적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어 데이터 자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국내 소득 및 납부세액과 해외 소득 및 해외납부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회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어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효세율은 기업별 실질 세부담을 평가하는데는 의미를 가짐
- 기업별 세부담과 소득을 합하여 추정된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별 실질부담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님
 - 기업별 실효세율은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자회사 또는 자회사간 소득을 이전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국가별 실효세율을 가지고 그 나라의 법인세부담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또한 세부담은 국내와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본소득과 관련된 모든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의 실효세율이라기 보다는 자본관련 실효세율로 해석해야 함
 - 기업회계자료에 나타난 납부세액에는 국세, 지방세, 해외납부세액, 자본재 구매에 대한 소비세, 자산양도세, 재산세, 프랜차이즈세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업의 과세소득에 감가상각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세전소득(EBT) 또는 감가상

각 제외 전 소득(EBDAT)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있음¹¹⁾

- 기업의 과세소득은 수입(revenue)에서 비용(임금, 중간재 투입비용,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일시에 비용공제되는 소비재화와 달리 내구재는 내용연수가 적용되고 있어 비용공제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 모든 나라가 감가상각비를 일시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용연수를 두고 조금씩 공제(write off)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 내용연수를 두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경우 세금 절감 효과는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재비용을 완전히 공제할 수 없게 됨¹²⁾
- 내용연수를 두고 공제 할 경우 비용은 과소 계산되고 과세소득은 과대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 감가상각을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함

□ <표 4>는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OECD 국가의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본 연구는 S&P의 Capital IQ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에 위치한 모회사를 기준으로 국가별 실효세율을 추정하였음
 - 석유와 가스관련 회사들을 제외하였으며¹³⁾ 모회사별 소득과 세부담을 합쳐 국가별 실효세율을 추정하였음

11) 소득은 국내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 세계 순소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EBT는 세계 순소득에 일부 이자지급과 특별 항목(extraordinary items)이 포함되어 있음, EBDAT는 세부담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액 공제 전의 소득을 의미함
 12) Pomerleau and Cole(2016)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실제비용에서 공제된 금액의 비율은 기기 82.9%, 건물 44.8%, 무형자산 74.2%로 추정하고 있음
 13) 석유 및 가스관련 회사들의 납부세액은 타 회사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석유 및 가스관련 회사들을 제외하였음

〈표 4〉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국가별 실효세율

	EBT 기준				EBTDA 기준				Obs
	2008	2015	2008년~2015년		2008	2015	2008년~2015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호 주	29.4	25.3	26.7	12	21.3	15.8	16.9	12	125
오 스트 리 아	22.7	22.4	21.7	22	14.1	14.2	13.1	22	35
벨 기 에	21.3	21.4	20.0	26	12.3	14.0	12.8	23	33
캐 나 다	18.6	20.2	18.8	28	10.1	11.9	11.2	29	190
칠 레	21.5	30.2	23.4	19	13.7	17.3	15.5	14	124
체 코	21.8	22.6	20.6	25	15.0	9.8	12.2	24	7
덴 마 크*	23.2	24.7	29.0	7	12.6	20.8	19.5	4	40
에 스토 니 아	16.5	23.3	16.0	31	7.9	8.1	8.6	32	4
핀 란 드	25.3	19.2	22.2	21	17.2	16.7	17.2	9	44
프 랑 스	33.7	24.7	29.9	5	18.9	12.4	17.1	10	229
독 일	30.9	26.2	27.5	10	18.1	18.4	17.9	8	217
그 리 스	27.1	32.5	29.9	4	16.0	15.7	15.4	17	34
헝 가 리	4.8	10.2	4.8	33	3.8	6.0	3.2	33	2
아 이 슬 란 드	25.5	25.4	25.3	14	13.7	18.8	17.0	11	1
아 일 랜 드	22.1	22.9	20.8	24	16.0	14.7	15.1	19	23
이 스 라 엘	16.5	22.4	19.6	27	9.4	11.9	10.9	30	92
이 탈 리 아	31.4	30.9	32.7	3	18.2	18.5	18.8	6	80
일 본	40.5	34.8	38.0	1	21.9	21.7	21.9	3	1244
한 국	23.5	23.8	22.9	20	12.1	13.9	14.5	20	3147
룩셈부르크	25.7	28.0	25.5	13	15.1	15.7	15.4	15	21
멕시코	25.3	35.1	29.7	6	17.7	16.2	18.3	7	47
네덜란드	40.8	21.6	34.3	2	32.1	7.6	23.9	2	55
뉴질랜드	27.7	23.3	27.3	11	14.1	14.3	14.4	21	32
노르웨이*	29.9	17.6	27.6	9	20.4	21.6	25.2	1	46
폴란드	19.0	19.1	16.8	30	13.8	12.2	11.7	25	100
포르투갈	22.6	24.5	23.8	16	10.8	11.4	11.5	27	19
슬로베니아	24.2	12.9	18.0	29	14.5	8.5	11.4	28	6
스페인	26.5	27.2	23.5	17	14.1	11.4	11.5	26	64
스웨덴	24.5	23.1	23.5	18	17.1	14.5	15.4	16	126
스위스	22.4	23.1	21.5	23	16.0	15.1	15.1	18	120
터키	21.0	9.0	11.9	32	15.2	6.7	8.9	31	51
영국	25.9	22.0	24.7	15	18.2	15.5	16.6	13	279
미국	29.8	27.7	28.6	8	20.3	18.1	19.4	5	1229
평균	24.9	23.5	23.8	.	15.5	14.2	15.1	.	.

주 : EBT: 세전소득, EBTDA: 세금,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전 소득
 자료: S&P Capital IQ를 이용하여 추정함

- EBT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2008년에 23.5%에서 2015년에 23.8%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OECD 국가 중 2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EBTDA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2008년에 12.1%에서 2015년에 13.9%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음

-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에 비해 2015년의 실효세율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기업의 회계자료는 국내와 해외의 세금과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로서 한계를 지님

- 아일랜드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12.5%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지만, 아일랜드에 소재한 모회사를 기준으로 추정한 실효세율은 22.9%로 OECD 국가 중 24위를 기록하고 있음
- 아일랜드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회계장부를 보면 소득에는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납부세액에도 국내 납부세액과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아일랜드의 실효세율이 높게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자국내 부담과 해외부담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비교 지표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 한계실효세율(METR)

□ 한계실효세율은 기업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한 단위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세율로 정의됨

- METR은 세금이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추정된 세율로 King and Fullerton(1984)에 잘 정의되어 있음
- Chen and Mintz(2008)은 King and Fullerton(1984)의 한계실효세율 공식에 자본관련 세금 몇 가지를 더 추가하여 METR을 추정하고 있음

○ 자본 유형 j 별 METR은 기업이 요구하는 세전 수익률 R_i^g 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자본의 사용자 비용) R_i^n 간의 차이가 R_i^g 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됨

$$METR_i = (R_i^g - R_i^n) / R_i^g$$

○ Chen and Mintz(1993)은 감가상각형 자본, 재고, 토지로 나누어 MERT를 추정하고 있는데, 기계 장비 등 감가상각의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¹⁴⁾

$$R^n = \beta i(1 - t_s) + (1 - \beta)\rho - \pi$$

$$R^g = (1 + t_m)(R^n + \delta)(1 - k)[1 - A + \tau(1 - t^s)] / (\alpha + R^n + \pi) / [(1 - t_s)(1 - t_p - t_g)] - \delta$$

14) Chen and Mintz(2008)은 재고의 수익률은 $R^g = (1 + t_m)(R^n + t_s \pi \zeta) / [(1 - t_s)(1 - t_g)] + \tau$ 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의 수익률은 $R^g = R^n(1 + t_m)[1 + \tau(1 - t_s)] / (R^n + \pi) / [(1 - t_s)(1 - t_p - t_g)]$ 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ζ 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선입선출법(FIFO)인 경우 1, 후입선출법(LIFO)인 경우 0, 두가지가 병행될 경우 0.5로 정의함

- 여기서 β 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i 는 부채비용(타 인자본 수익률), t_s 법정 법인세율, ρ 주식비용(자기자본 수익률), π 인플레이션, t_m 거래관련 세율(양도세율, 수입관세, 자본재에 대한 소비세), δ 는 경제적 감가상각률, k 투자세액공제율, A 는 투자세액공제액의 현재가치, τ 은 자본세율(capital tax rate), α 은 감가상각율, t_p 는 자산세율(property tax rate), t_g 는 총수입세율(gross receipts tax rate)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MERT를 추정하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ERT가 높게 추정됨
- Chen and Mintz(2008)은 산업별·자본유형별 METR을 추정하고 이를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국가별 METR을 제시하고 있음
- MERT는 경제학적 이론에 충실하고 국가간 MERT 차이가 투자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님

□ <표 5>은 Chen and Mintz(2015)가 추정된 한계 실효세율과 국가별 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한계실효세율은 2005년에 32.8%이던 것이 2014년에 30.1%로 하락하였으나, 순위는 2005년에 6위에서 3위로 상승했음¹⁵⁾
- 한계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의 수익률은 낮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투자하기에 적합한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이며, 일본과 호주가 우리의 뒤를 잇고 있음

- 캐나다의 한계실효세율은 2005년에 38.8%로 OECD 국가 중 1위였으나, 2014년에는 19%로 순위가 14위로 크게 하락하여 투자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탈리아와 독일도 2005년에 4위와 5위에서 2014년에 8위와 9위로 순위가 하락한 국가로 꼽히고 있음
- Chen and Mintz(2015)을 이용하여 국제 비교를 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부채비율과 물가로 조정된 이자율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음
- 자본 유형을 장비(equipment), 구축물(structure), 재고(inventory), 토지로 나누어 반영하고 있지만, 무형자산을 반영하지 않아 MERT가 과대 추정되었을 확률이 높음
- Gravelle(2014)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MERT를 반영할 경우 Chen and Mintz(2015)가 추정한 미국의 2010년 MERT는 34.6%에서 28.7%로 하락함¹⁶⁾

15) Chen and Mintz(2015)은 현재 한국에서 세계개편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 해외납부세액 공제 축소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음

16) Gravelle(2014)에 따르면 무형자산에 대한 미국의 MERT는 -4.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5〉 Chen and Mintz의 한계실효세율(%)

	한계실효세율		순위		변화(%p)
	2005	2014	2005	2014	
France	35.4	36.0	3	1	0.6
U.S.	35.9	35.3	2	2	-0.6
S. Korea	32.8	30.1	6	3	-2.7
Japan	31.5	29.3	7	4	-2.2
Austria	26.2	26.2	10	5	0.0
Spain	30.4	26.0	8	6	-4.4
Australia	25.9	25.9	11	7	0.0
Italy	33.5	24.5	5	8	-9.0
Germany	34.0	24.4	4	9	-9.6
U.K.	30.0	23.7	9	10	-6.3
Norway	24.4	23.5	12	11	-0.9
Portugal	19.6	22.8	20	12	3.2
New Zealand	20.5	21.6	17	13	1.1
Canada	38.8	19.0	1	14	-19.8
Denmark	21.6	18.6	15	15	-3.0
Belgium	23.6	18.5	13	16	-5.1
Switzerland	18.0	17.5	23	17	-0.5
Mexico	17.4	17.4	27	18	0.0
Luxembourg	19.8	17.2	19	19	-2.6
Estonia	20.2	17.1	18	20	-3.1
Netherlands	22.3	17.1	14	20	-5.2
Israel	19.5	16.1	21	22	-3.4
Hungary	14.7	16.1	29	22	1.4
Sweden	20.9	16.1	16	22	-4.8
Slovak	12.7	14.9	31	25	2.2
Poland	14.6	14.6	30	26	0.0
Finland	18.6	14.2	22	27	-4.4
Greece	17.5	14.2	26	27	-3.3
Iceland	18.0	14.2	23	27	-3.8
Czech	18.0	12.7	23	30	-5.3
Ireland	10.2	10.2	33	31	0.0
Slovenia	15.2	9.8	28	32	-5.4
Chile	7.3	8.1	34	33	0.8
Turkey	10.9	5.7	32	34	-5.2
단순평균	22.3	19.4	--	-	-2.9
가중평균	31.4	28.2	--	-	-3.2

자료: Chen and Mintz(2015), "The 2014 Global Tax Competitiveness Report"의 Table 3에서 재인용.

주: 가중평균은 실질 GDP로 가중된 평균값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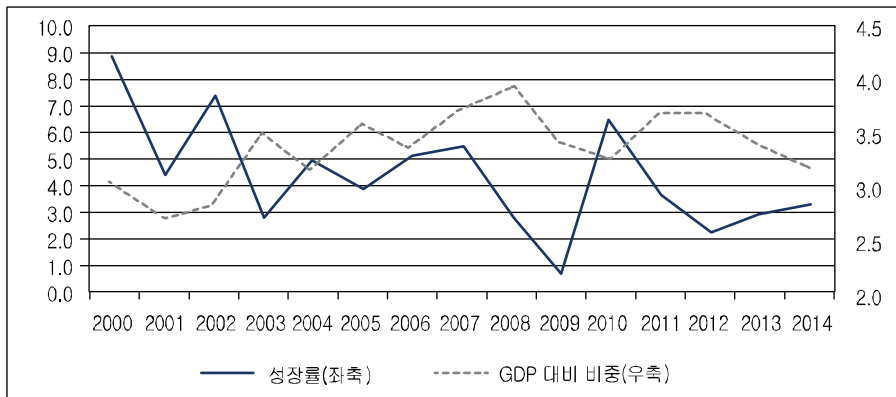
라. 기타 국제비교 지표

(1)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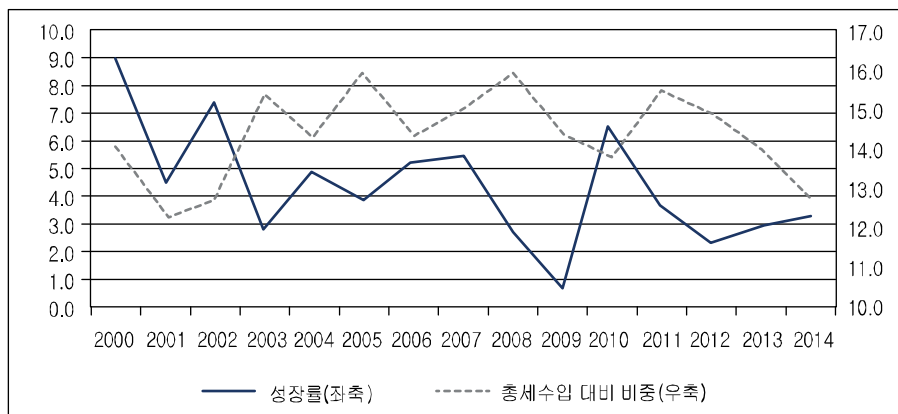
□ GDP 대비 또는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국제비교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지표 구축이 쉽고 단순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국제비교를 위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 GDP대비 법인세비중 지표의 장점은 경제규모를 고려한 세부담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임
-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낮고, 규모가 큰 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GDP를 고려한 국제비교가 필요함
- 분모에 GDP가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법인세수 비중이 올라가고 호황기에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을 지님

〈그림 1〉 한국의 성장률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그림 2〉 한국의 성장률과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



자료: 국제통계연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6〉 GDP와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

	GDP 대비					총세수입 대비				
	GDP대비		순위		변화 (%p)	GDP대비		순위		변화 (%p)
	2005	2014	2005	2014		2005	2014	2005	2014	
호 주	5.8	4.9	4	2	-0.9	19.2	18.0	2	2	-1.2
오 스트 리 아	2.2	2.1	25	21	-0.1	5.3	5.0	29	26	-0.3
벨 기 에	3.2	3.2	15	7	0.0	7.3	7.1	21	17	-0.2
캐 나 다	3.4	3.1	12	10	-0.3	10.4	9.9	11	10	-0.5
체 코	4.2	3.6	5	6	-0.6	12.1	10.8	7	7	-1.3
덴 마 크	3.4	2.7	12	16	-0.7	7.1	5.3	23	24	-1.8
에 스토 니 아	1.4	1.8	32	27	0.4	4.7	5.4	32	23	0.7
핀 란 드	3.2	1.9	15	24	-1.3	7.6	4.4	19	28	-3.2
프 랑 스	2.4	2.0	24	22	-0.4	5.5	4.5	28	27	-1.0
독 일	1.7	1.5	30	29	-0.2	5.1	4.2	30	29	-0.9
그 리 스	3.2	1.3	15	32	-1.9	10.3	3.9	12	30	-6.4
헝 가 리	2.1	1.5	27	29	-0.6	5.7	3.9	27	30	-1.8
아 이 슬 란 드	1.9	3.0	29	11	1.1	4.9	7.7	31	15	2.8
아 일 랜드	3.3	2.5	14	19	-0.8	11.1	8.3	8	14	-2.8
이 스 라 엘	3.5	3.2	10	7	-0.3	10.2	10.3	13	9	0.1
이 탈 리 아	2.7	2.8	20	14	0.1	6.8	6.3	25	19	-0.5
일 본	4.2	4.0	5	5	-0.2	15.5	13.2	5	4	-2.3
한 국	3.6	3.2	8	7	-0.4	15.9	12.8	4	5	-3.1
룩셈부르크	5.9	4.3	3	4	-1.6	15.4	11.4	6	6	-4.0
네덜란드	3.6	1.9	8	24	-1.7	9.8	5.2	14	25	-4.6
뉴질랜드	6.0	4.4	2	3	-1.6	16.8	13.7	3	3	-3.1
노르웨이	11.5	7.1	1	1	-4.4	27.0	18.2	1	1	-8.8
폴란드	2.1	1.8	27	27	-0.3	6.4	5.5	26	22	-0.9
포르투갈	2.7	3.0	20	11	0.3	8.7	8.6	16	12	-0.1
슬로바키아	2.7	3.0	20	11	0.3	8.6	9.8	17	11	1.2
슬로베니아	2.7	1.4	20	31	-1.3	7.2	3.9	22	30	-3.3
스페인	3.8	2.0	7	22	-1.8	10.7	5.9	10	21	-4.8
스웨덴	3.5	2.6	10	17	-0.9	7.5	6.1	20	20	-1.4
스위스	2.2	2.8	25	14	0.6	8.4	10.5	18	8	2.1
터키	1.7	1.9	30	24	0.2	7.1	6.4	23	18	-0.7
영국	3.2	2.5	15	19	-0.7	9.3	7.5	15	16	-1.8
미국	2.9	2.6	19	17	-0.3	11.0	8.5	9	13	-2.5
OECD 평균	3.4	2.8	-	-	-0.6	10.0	8.2	-	-	-1.8

주: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체코와 멕시코는 제외되었으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의 경우 호주, 그리스, 노르웨이, 폴란드는 2013년 자료이며, 총세수입대비 법인세수 비중의 경우 호주, 그리스, 노르웨이, 폴란드, 일본, 미국은 2013년 자료임.

자료: OECD Stat.

-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한 국가의 법인세 의존도와 세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평가됨
 - 법인세는 소득세나 소비세에 비해 경제적 비효율성이 큰 세목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인세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제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나라가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을 제외하면 2005에 비해 2014년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4년 현재 3.2%로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어, GDP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4년 현재 12.8%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분류됨

(2) Paying Taxes 지표

□ Paying Taxes 지표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의 11개 지표 중 하나로 국가별 기업세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음

- World Bank는 189개국의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률, 세목수, 납세순응시간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납세의무의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별 Paying Taxes 지표를 발표하고 있음

- 설문조사는 중간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세, 기타 법인소득세, 사회보장 및 근로소득세의 기업부담분, 재산세, 재산양도소득세, 배당세, 자본취득세, 자동차세, 기타 수수료 등이 조사대상임
 - 각 세금납부에 들어가는 시간과 관련 세목수를 바탕으로 납세협력 비용을 추정하고 있음
 -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별 기업 조세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조세의 효율성은 189개국 중 2005년에 106위를 기록하다가 2014년의 29위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의 순위가 크게 향상된 데는 기업이 납무해야 하는 세목이 48개에서 12개로 줄어들고 납세 시간도 290시간에서 188시간으로 줄어들어 납세 순응비용이 크게 개선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표 8>에서 보듯이 법인소득세가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추정되는 실효세율은 2005년에 비해 0.1%p 하락하는데 그쳐 순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표 7〉 Paying Taxes가 평가한 한국의 기업조세 순위

	순위	Number of Payment	Time of Payment	Tax Rate
2005	106	48	290	34.9
2014	29	12	188	33.2

〈표 8〉 Paying Taxes에서 제공하는 실효 법인소득세율(%)

	실효세율 (% of profit taxes of commercial profit)		순위		변화
	2005	2014	2008	2014	
Australia	26.9	26.0	7	4	-0.9
Austria	15.1	16.8	22	17	1.7
Belgium	5.4	8.4	34	30	3.0
Canada	26.0	3.9	8	33	-22.1
Chile	18.3	22.3	15	9	4.0
Czech Republic	5.9	9.5	33	27	3.6
Denmark	28.0	18.7	4	14	-9.3
Estonia	9.3	8.4	27	30	-0.9
Finland	17.0	11.8	17	24	-5.2
France	8.3	0.5	31	34	-7.8
Germany	21.6	23.2	13	8	1.6
Greece	15.1	19.7	22	11	4.6
Hungary	7.9	11.8	32	24	3.9
Iceland	8.4	9.1	29	29	0.7
Ireland	14.2	12.4	25	23	-1.8
Israel	27.7	23.6	5	6	-4.1
Italy	30.8	19.5	3	12	-11.3
Japan	33.2	28.9	1	2	-4.3
Korea	18.3	18.2	15	15	-0.1
Luxembourg	16.7	4.2	18	32	-12.5
Mexico	22.4	25.4	12	5	3.0
Netherlands	26.0	20.4	8	10	-5.6
New Zealand	32.1	30.0	2	1	-2.1
Norway	24.9	23.6	10	6	-1.3
Poland	12.7	14.5	26	18	1.8
Portugal	15.2	13.6	21	19	-1.6
Slovak Republic	9.0	10.5	28	26	1.5
Slovenia	14.3	12.7	24	22	-1.6
Spain	24.2	13.3	11	20	-10.9
Sweden	16.5	13.1	19	21	-3.4
Switzerland	8.4	9.3	29	28	0.9
Turkey	15.9	17.9	20	16	2.0
United Kingdom	21.3	19.2	14	13	-2.1
United States	27.3	28.1	6	3	0.8
OECD평균	18.4	16.1	.	.	-2.2

자료: 2014년의 실효세율은 'Paying Taxes 2008'로부터 추출했으며, 2014년의 실효세율은 'Paying Taxes 2016'으로부터 추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의 순위를 시산하였음

(3)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ITC) Index

□ ITC는 미국의 Tax Foundation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써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비세, 재산세 등의 효율성 점수와 순위를 평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소비세는 3위를 차지한 반면 재산세는 30위, 국제조세는 31위, 법인세는 15위를 차지하고 있어 종합순위는 13위를 기록하고 있음
- 법인세의 평가항목은 크게 법정최고세율, 비용회복(cost recovery), 조세유인 및 복잡성으로 나누어짐
 - 비용회복은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연도와 인정비율, 재고평가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음.
 - 조세유인 및 복잡성은 Patent Box 제도의 유무, R&D 세액공제 유무, 법인세 납부 시간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2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성이 큰 분야에 속함
 - 우리나라의 효율점수는 64.2%로 평가되고 있어 최고 점수를 받은 에스토니아와 비교하면 35.8%의 효율 개선의 여지가 있음¹⁷⁾

(4) 회귀분석을 통한 정상수준 지표

□ 법인세의 정상수준이란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사회·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준으로 정의됨

- 정상수준을 추정할 때 종속변수로 법정세율 또는 GDP 대비 법인세부담 비중이 사용되며, 설명변수로는 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경제, 사회, 정치적 변수 들이 사용됨

○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정상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치와 비교하여 법인세 부담의 높고 낮음을 평가함

- <표 9>은 유진성·황상현(2015)이 추정한 법인세 부담의 정상치와 실제치를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정상치 대비 실제치가 105.7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치보다 실제치가 5.7%p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정상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인세율 24.2%에서 1.3%p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임
-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도 우리나라는 정상치(100)보다 실제치가 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7) 효율점수는 DTF(distance to frontier)기법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생산가능곡선을 추정하고 생산가능곡선상에 놓인 국가에게 가장 높은 효율점수(100)를 부여하고 생산가능곡선과의 거리로 비효율성을 측정함

〈표 9〉 법인세의 ITC 지표

	종합(overall)		법정 최고세율		비용회복 (cost recovery)		유인 및 복잡성	
	순위	효율점수	순위	효율점수	순위	효율점수	순위	효율점수
Australia	26	53.8	28	45.5	14	49	12	77.4
Austria	19	62.7	18	61.1	12	51.8	17	72.1
Belgium	29	48.9	32	33.1	2	65.8	28	61.9
Canada	23	57.9	21	57.1	28	41.3	11	79.4
Chile	10	68.2	15	68.9	30	40.1	6	91.6
Czech	7	71.6	3	79.8	15	49	21	68.8
Denmark	13	65.3	16	65.8	18	47.9	13	77.1
Estonia	1	100	6	76.7	1	100	3	93.8
Finland	4	74.1	6	76.7	32	39.2	2	97.1
France	31	43.8	33	31.7	9	53.1	25	66
Germany	24	56.7	30	45	8	53.2	8	82.1
Greece	20	60.8	20	58	23	43.9	7	83.3
Hungary	11	66.9	3	79.8	31	40.1	24	66.3
Iceland	12	65.6	6	76.7	29	41.3	23	66.5
Ireland	2	85.9	1	100	22	45.9	9	80.5
Israel	25	54.2	22	56.4	4	56.4	31	47.2
Italy	28	51.1	24	53.3	5	56.1	32	43.6
Japan	33	33.6	31	39	27	41.8	33	35.1
Korea	15	64.2	17	63.6	7	55.1	22	67.5
Luxembourg	21	59.9	14	69	3	61.7	34	33.9
Mexico	30	46.6	28	45.5	21	46	29	58.5
Netherlands	16	64	18	61.1	11	52.1	14	76.1
New Zealand	22	59.5	25	51.8	25	42.7	4	93
Norway	18	63.2	23	54.9	26	41.9	1	100
Poland	9	69	3	79.8	24	43	20	69
Portugal	27	52.2	27	47.1	17	48	18	70.9
Slovak	17	63.4	12	70.4	10	52.2	30	55.8
Slovenia	3	76.6	2	86	20	47	15	76
Spain	32	41.8	25	51.8	34	23.7	26	63
Sweden	6	73.8	12	70.4	13	50.5	5	91.8
Switzerland	5	73.8	11	73.1	6	55.3	10	79.9
Turkey	8	69.9	6	76.7	16	48.5	19	70
United Kingdom	14	64.9	6	76.7	33	33.3	16	75.6
United States	34	31.4	34	17.5	19	47.1	27	62.2

자료: '2015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의 Table 3에서 재인용.

〈표 10〉 OECD 기준 분석결과 주요국 법인세 부담수준 실제치와 정상치(2012년)

	명목 최고법인세율			법인세부담률		
	실제치 (A)	정상치 (B)	비교지표 (A)/(B)×100	실제치 (A)	정상치 (B)	비교지표 (A)/(B)×100
스웨덴	26.3	23.5	111.8	2.6	2.9	89.7
미국	40.0	36.3	110.2	2.5	2.5	98.2
호주	30.0	27.4	109.5	5.2	5.5	95.4
노르웨이	28.0	26.0	107.9	10.5	10.2	103.0
한국	24.2	22.9	105.7	3.7	2.8	131.5
프랑스	33.3	31.7	105.0	2.5	2.5	100.3
일본	38.0	37.4	101.6	3.7	3.8	98.5
덴마크	25.0	25.3	98.9	3.0	3.0	100.1
이탈리아	31.4	32.0	98.2	2.8	2.6	107.6
뉴질랜드	28.0	28.6	98.1	4.7	4.2	112.1
영국	26.0	26.9	96.8	2.7	2.9	92.9
네덜란드	25.0	25.9	96.7	1.9	2.4	78.6
독일	29.5	30.7	95.9	1.8	1.4	126.1

자료: 유진성·황상현(2015),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저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의 〈표 7〉에서 재인용.

3. 시사점

□ 국제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표마다 특성이 다르고 비교 목적에 적합한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한 종합적인 평가가 요구됨

□ 최근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실효세율이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기존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하고 있음
 - 과세관청의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추정한 실효세율은 국가마다 상이한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어 국제비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기업의 회계장부를 이용하여 국가별 실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지만, 기업마다 회계기준이 다르고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효과를 분리하기 어려워 각 국가의 실질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비교의 지표로 적합하지 않음

□ 실효세율보다는 한 단위 투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한계실효세율이 국제비교의 지표로 보다 적합함

- 한계실효세율은 법정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기타 자본관련 세율, 감가상각률, 인플레이션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비교 지표로 적합함

- Chen and Mintz(2015)가 추정한 한계실효세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에 30.1%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계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임

□ 이 밖에도 다양한 국제비교 지표들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비효율적이고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국제비교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GDP 대비 법인세 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고,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높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음

- 미국의 Tax Foundation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법인세율의 ITC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위, World Bank가 발표하는 'Paying Tax' 지표에서는 15위를 기록하여 법인세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사회·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추정한 '정상수준' 지표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모든 국제비교 지표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 간 조세경쟁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법인세 인상 논쟁을 중단하고 법인세율을 국제수준에 맞게 인하하여 자본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뒤야함

[참고문헌]

- 김종면,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유진성·황상현, “우리나라 법인세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한국경제연구원, 2015.
- 조경엽,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6.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007~2015.
- 기획재정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Chen D. and J. Mintz, “Taxing Business Investment: A New Ranking of Effective Tax Rates on Capital”, World Bank, 2008.
- Chen D. and J. Mintz, “The 2014 Global Tax Competitiveness Report: A Proposed Business Tax Reform Agenda”, University of Calgary, 2015.
- Gravelle J. G., “International Corporate Tax Rate Comparisons and Policy Implic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4.
- King M. A. and D. Fullerton,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A Comparative Study of U.S., U.K., Sweden and West German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Pomerleau K. and A. Cole,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15”, Tax Foundation, 2016.
- OECD, Tax Database, 2007~2015.
-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 World Bank, 「Paying Taxes 2016」, 2016.
- World Bank, 「Paying Taxes 2008」, 2008.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6년 7월 28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